

1. 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의 제명을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방식 마련(안 제23조)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자격) 등에 근거하여 항공이동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평가, 경력 등의 기준 수립 및 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사항 규정
- 나.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4, 제2조의5)
- 다.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자를 장관에서 소속기관 소속 부서장으로 변경(안 제21조)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서의 교육훈련 수료증과 형식을 통일하여 소속기관 부서장의 서명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 발급
- 라.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 실적의 관리방식 변경(안 제20조)
 - 기존 개인별로 작성·유지하는 방식에서 전자시스템(통합항공안전정보 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제5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첨부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사항을 규정함”을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 고정통신시스템(AF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의 항공고정 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5.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파 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를 제24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각각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야”를 “이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5조”를 “제4조”로, “받아야”를 “이수하여야”로,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을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중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항공

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주어야”를 “부여하여야”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4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8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2장 교육훈련계획”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본문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교육훈련의 운영”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교육훈련의 운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 단서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항공정보통신”을 “항공정보통신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로, “실무 경험”을 “실무경험을 가지고”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평가와 사후관리”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평가와 사후관리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항공이동통신업무종사자 지정) ① 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
 2.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
- ②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

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제3항 중 “항목에 대하여는”을 “항목은”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에 포함”을 “따라 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① 종사자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2조) 중 “장은”을 “부서장은”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3조) 중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항공이동통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u>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u>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 ----- <u>항공통신업무종사자</u> ----- ----- <u>사항</u>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항공고정통신업무</u>”란 <u>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 TN), 항공정보교환시설(AM HS)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u> 5. “<u>항공이동통신업무</u>”란 <u>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u>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제6조(기본 방침) ① 신규 임용 종사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받아	하여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 --- 이 훈령에 대하여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6월 30일----- ----- -----.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기본 방침) ① ----- ---- 제4조 ----- ----- -----. ② 제4조 ----- ----- ----- <u>이수하여야</u>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 ----- <u>이수</u>
---	---

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 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 다만,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 또는 해당 분야에서 근 무한 경력에 따라 신규 임용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여야 ----- “신규 보직자 교육훈련”----- ----- ----- ----- ----- -----.
3. 제5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종사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	3. 제4조 ----- ----- ----- -----
제7조(위탁교육훈련) 종사자의 위 탁교육훈련은 「항공안전공무 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훈련) ----- -----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
제8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항공 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종사자에 게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 ----- ----- ----- ----- ----- 부여하여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2장 교육훈련계획	<삭 제>

<신 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교육훈련 대상의 구분) 중 사자 교육훈련은 제5조의 담당 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 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 훈련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대상의 구분) -- ----- 제4조----- ----- ----- ----- -----.
제12조(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담당업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과정의 구분) ① ----- ----- 제4조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 도의 말까지로 한다.
제13조(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 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제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 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	제12조(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 ----- ----- ----- ----- 제4조 ----- -----

력과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를 개인별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2조(수료증의 발급) 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결과의 보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완료 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템(NARMI)(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시스템에 입력-----.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료증의 발급) ----- ----- 부서장은 ----- ----- ----- --. 제22조(교육 결과의 보고) ----- ----- ----- ----- 국토교통부장관----- ---. 제23조(항공이동통신업무종사자 지정) ① 항공이동통신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의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u>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u>	A) 무선통신사 4등급 이상 취득 2. <u>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로 지정된 자와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근무</u> ② <u>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수료증 2. 제1항의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	---